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개정된 퇴직소득 정산방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재정경제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8호의9 중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를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르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4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4호서식(6)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00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⑭란은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매도, 매수인 경우에는 결제일(T+2일)로, 계좌간이체 및 감자 등 기타는 거래(결제)일로, 감액배당은 배당금지급일로 작성합니다]

10. ⑮란에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종류	매도	매수	계좌간이체						감자 등 기타		감액배당
			입고			출고			수량감소	수량증가	
			본인	타인		본인	타인				
				양도	양도외		양도	양도외			
코드	01	03	05	07	08	06	09	10	11	12	13

11. ㉑란과 ㉒란은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감액배당인 경우에는 감액배당 받은 주식수량과 조정된 취득가액(취득가액-감액배당액)으로 작성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28의8. (생략)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u>별지 제24호의5</u> 서식과 같다.	제100조(일반서식) ----- -----. 1. ~ 28의8. (현행과 같음) 28의9. ----- ----- <u>별지 제24호의5</u> 서식에 따르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은 <u>별지 제24호</u> 서식(6)에 따른다.
29. ~ 44. (생략)	29. ~ 44. (현행과 같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10쪽 중 제4쪽)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가산세		조정항목세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소득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소득세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임대차	C01																								
				비과세종합소득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이자	넷	달		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청년도약계좌	C38																								
				청년미래예적금	C39																								
				장병내일준비저축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세금	특	례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신탁투자지구별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03																								
				공모부동산신탁투자지구별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신탁투자지구 배당소득(9%)	C95																								
				조합 등 예탁금(5%)	CA1																								
				조합 등 출자금(5%)	CA2																								
세금	우	대		조합 등 예탁금(9%)	CA3																								
				조합 등 출자금(9%)	CA4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배당소득(9%)	CA6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금제회 초과반환금(기분세출)	C18																								
				부동산신탁투자지구별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개인 투자용국채	CA5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지구 배당소득	C96																								
				이자소득	C14																								
일반	과	세		배당소득	C24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자(25%)	C16																								
				출자금동시이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C59																								
				벤처기업투자신탁	C41																								
근로				장기주택임대차	C42																								
				연금저축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C47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배당소득	C48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C48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7. ㉔ 지급일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㉕ 귀속연월일: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㉖ 과세구분, ㉗ 소득의 종류, ㉘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㉙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인										법인										(과세제외의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법인세 납입부 없는 법인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비과세 면제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일령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5%)	일반 과세	일반 과세 기타 세율	일반 과세	일반 과세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재산 소득	신탁재산 소득	그 밖의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원천 징수 대상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㉙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0)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3(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간접지주의 배당(소득세법 제173(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3(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 제173(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 제163(3))										13	외국채권(소득세법 제173(3), 법인세법 제16)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 제163(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치른 분할금(소득세법 제173(4))									
외국법인이 국내지정 등의 회사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3(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제173(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3(6))										16	외국채권·채권·채권, 간접지주의 배당, 기타 유한책임의 배당(소득세법 제173(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 제163(7))										17	「국채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해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소득세법 제173(7))									
환매조건부 예매차익(소득세법 제163(8))										18	「국채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치른 분할금(소득세법 제173(8), 법인세법 제93(2))									
지속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소득세법 제163(9))										19										
지속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 제163(10))										20										
직장공동회 초보반환금(소득세법 제163(11))										21	출자공동투자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173(8))									
비영리재단금의 이익(소득세법 제163(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제269(3)(1), ES)									
채권대지거래에 따른 이자당입금(소득세법 시행령 제26(4))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9(3)(2), DS)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당입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14(2)(3))										24	주식대지거래에 따른 배당당입금(소득세법 시행령 제269(3))									
그 밖에 금융기관에 따른 대가로서의 상각이 있는 것(소득세법 제163(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상각이 있는 것(소득세법 제173(9))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제163(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제173(10))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각이 되기에 대한 이자 및 손익의 이익(법인세법 제93(1)(3))										27	상장투자증권(소득세법 제173(5)(3), ETN)									
											금전적 아닌 재산의 이익확장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서의 이익(소득세법 제173(5)(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좌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서의 이익(소득세법 제173(5)(4))									

㉚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H	벤처투자조합 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6)									
											벤처투자조합 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세법 제86(3))										SB	공공기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소득세법 제20(1))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제87)										SC	국외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법 제121(2)(3))									
농어업자립기부금(소득세법 제87)										SD	외화보유자세권의 이자(소득세법 제21(1))									
농어업전문투자자특례(소득세법 제87(2))										SE	외국환업무허가금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세법 제21(2))									
신발투자자세 배당(소득세법 제87(5))										SF	국공기관 국외보유(채권) 외화보유채권과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세법 제21(3))									
부동산신탁투자자구분·부동산신탁채권 배당(소득세법 제87(6))										SG	SC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법 제21(2)(2))									
비거주자특별저축(소득세법 제88(2))										SH	시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세법 제21(3))									
유전자주특별 배당(소득세법 제88(4)(8))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제66(3), ②)									
농림 근로자의 자지비 배당(소득세법 제88(4)(8))										SJ	영외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제67(3), ③)									
조합 등 출자자(소득세법 제88(5))										SK	농림회사 배당(소득세법 제68(4))									
세금유예특별저축(소득세법 제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유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조합 등 예탁금(소득세법 제89(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유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조합 등 모펀드 투자소득(소득세법 제91(1)(2))										SU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유무의 이익(소득세법 제12(1))									
저항자(소득세법 제91(1)(4))										SV	법정·상대방합의 10대 이상으로 분리된 신탁인 신탁계약금(소득세법 제129(1)(7), 조세특례제한법 제9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소득세법 제91(1)(5))										SW	「국채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									
고위험투자신탁(소득세법 제91(1)(6))										SX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매대금 이자(소득세법 제129(1)(1))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8))										SZ	상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제129(2)분문)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8))										TA	금융신탁계약 및 비법정신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소득(소득세법 제129(2)분문)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8))										TB	외국소득세법을 본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제129(4))									
공공부동산신탁투자구분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세법 제87(7))										TC	국외법인의 배당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3(2))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2))										TD	해외채권으로 「PFO」와 「PF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2))										TE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정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한 경우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2))										TF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정에 대한 비과세·면제된 경우									
청정유대형 주택임대주택투자(소득세법 제91(1)(2))										TG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정에 대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 1 / 미해당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업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임원 여부	[]해당 []미해당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 12. 31. 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정년퇴직 []정리해고 []임원퇴직 []종간정산	[]자발적 퇴직 []기타
------	----------	--------	------------------------------------	--------------------

퇴직 급여 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⑱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미해당		

근속 연수	구분	⑲ 입사일	⑳ 기산일	㉑ 퇴사일	㉒ 지급일	㉓ 근속월수	㉔ 제외월수	㉕ 가산월수	㉖ 증복월수	㉗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산내용				금액	
	㉘ 퇴직소득(⑰)					
	㉙ 근속연수공제					
	㉚ 환산급여[(㉘-㉙)× 12배/정산근속연수]					
	㉛ 환산급여별공제					
	㉜ 퇴직소득과과세표준(㉚-㉛)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㉝ 환산산출세액(㉜×세율)					
	㉞ 퇴직소득 산출세액(㉜×정산근속연수/12배)					
	㉟ 세액공제					
	㊱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㊲ 신고대상세액(㉞-㉟-㊱)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㉓ 신고대상세액(㉗)	연금계좌입금명세					㉔ 퇴직급여 (⑰)	㉕ 이연퇴직소득세 (㉘×㉙/㉚)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㉖ 계좌입금액		
		㉗ 합계						

납 부 명 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부표 작성 여부 * (뒤쪽) 작성방법 제 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㉘ 신고대상세액(㉗)					
	㉙ 이연퇴직소득세(㉕)					
	㉚ 기원천징수세액					
	㉜ 차감원천징수세액 (㉚-㉙ 또는 -㉚)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 1을 선택합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써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함)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소득자란의 ⑩ 임원 여부란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⑩ 임원 여부란에서 해당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⑪ 2011. 12. 31. 퇴직금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 퇴직급여현황란(⑬란부터 ⑰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⑮ 퇴직급여란, ⑯ 비과세퇴직급여란 및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함)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 ⑱ 과세이연 여부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에 체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 근속연수란(⑲란부터 ㉗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⑲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㉑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㉒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적습니다.
 - ㉓ 제외월수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 ㉕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란(㉚란부터 ㉜란까지)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란(㉝란부터 ㉟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㉝ 퇴직소득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㉞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㉝ 환산산출세액란: ㉝ 퇴직소득과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㉞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㉟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부표의 ㉞, ㉟, ㊱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란(㉓란부터 ㉕란까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㉓ 계좌입금금액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㉔ 퇴직급여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㉕ 이연퇴직소득세란: ㉓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용(㉖ 계좌입금금액 / ㉔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 납부명세란(㉚란부터 ㉜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㉚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㉗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 ㉛ 이연퇴직소득세란: ㉕ 이연퇴직소득세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㉜ 기원천징수세액란: 부표 작성 여부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부표의 ㉞, ㉟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 ㉜ 차감원천징수세액란: ㉚ 신고대상세액에서 ㉕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다만, 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㉚ 신고대상세액과 ㉜ 기원천징수세액의 음수값 중 큰 값(절대값이 작은 값)을 적습니다.
 -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㉓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부표 작성 여부에 체크한 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또는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부표를 작성합니다.[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작성 대상]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상세 내역 작성]

① 지급 회차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세액	⑦ 과세이연 여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합계						

Ⅱ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Ⅰ의 ⑦ 과세이연 여부란에서 '해당'에 체크한 경우 작성)

⑧ 지급 회차	⑨ 연금계좌 취급자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계좌 번호	⑫ 입금 금액	⑬ 인출 금액	⑭ 이연 퇴직소득 잔액	⑮ 원천 징수세액	⑯ 이연 퇴직소득세 잔액	⑰ 정산후 이연퇴직 소득세 차감액
합계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 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⑤ "퇴직급여"란의 합계는 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 차감징수세액"란: ⑤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④ 차감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세액을 적습니다.
- "⑦ 과세이연 여부"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 으로 적습니다.
- "⑧ 지급회차"란: "① 지급회차"란에 적힌 해당 회차를 적습니다. 만약 한 지급회차에 연금계좌취급자가 다수일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급회차란에는 동일한 회차를 적습니다.
- "⑫ 입금금액"란: 지급회차별로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각 호에 따라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적습니다.
- "⑬ 인출금액"란부터 "⑮ 원천징수세액"란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⑮ 원천징수세액"란: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⑮ 인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⑯ 이연퇴직소득세 잔액"란: 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⑯ 이연퇴직소득잔액)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⑰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 0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합계에 적고, 이연퇴직소득이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⑯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각 연금계좌에 안분하여 적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이 부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여 []부
		의료비연금계좌		[]여 []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안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계좌 명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⑬))×120%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13.3.1. 전[] 이후[]				

소득 명세	⑰ 귀속연월				⑱ 퇴직분			
	인출 분 연금수령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㉓ 부득이 한 사유	[] 천재지변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재난피해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⑲ 일반연 금						
		㉑ 의료비 인출						
		㉒ 부득이 한 사유						
	㉔ 연금외수령					㉕ 연금외 수령 사유	[] 일반인출 [] 한도초과 [] 주택차액등 반환	

세 액 명 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㉖ 과세제외금				
	연금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3%	
		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4%	
			5%		
	퇴직소득	㉙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㉚ 퇴직분					
기타소득	㉛ 연금외수령		15%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정 명세	당기 차감 공제액(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㉛ 전기 이월 공제액	㉜ 당기 발생 공제액	㉝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㉞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㉗) 부득이한 사유	㉟ 퇴직소득	㊱ 기타소득	㊲ 이차소득	㊳ 합 계 (㉝+㉞+㉟+㊱+㊲+㊳)
				㊴ 연금수령				㊵ 차기 이월 공제액 (㉛+㉜-㊴)

납 부 명 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㉓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㉔ 퇴직소득					
㉕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㉞ 퇴직	㉟ 기납부세액 명세	㊴ 세액이연 퇴직소득

작성 방법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 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 에 "√"표를 합니다.
- 장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 나. ⑪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 다. ⑫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 라.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란에 "√"표를 합니다.
 - 마. ⑭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바. ⑮ 연금수령한도란: ⑪ 연금계좌평가액/(11-⑬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⑭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사.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⑭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 소득명세 중 ⑬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㉑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㉒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⑬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㉒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㉕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연금소득의 ㉖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④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60%,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 다. 연금소득의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라. 퇴직소득의 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④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 마. 퇴직소득의 ㉙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⑬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⑤의 ㉕가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가. 지급액 란: ㉚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 부표 ㉞, ㉟, ㊱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①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 거 증 감 누 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 기 증 감 누 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성 방법

①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① 과세제외금액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 ⑤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⑦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㉔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④ 과세이연 여부		[]해당 []미해당								
근속 연수	구 분	⑤ 입사일	⑥ 기산일	⑦ 퇴사일	⑧ 지급일	⑨ 근속월수	⑩ 제외월수	⑪ 가산월수	⑫ 중복월수	⑬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⑭ 정산퇴직소득(③)									
		⑮ 근속연수공제									
		⑯ 환산급여 [(⑬-⑮) × 12배 / 정산근속연수]									
		⑰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 세액계산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⑬-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⑱ × 세율)									
		⑳ 퇴직소득 산출세액(⑱ × 정산근속연수/12배)									
		㉑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㉒ 신고대상세액									
이연 세액		㉓ 이연 퇴직소득세									
		㉔ 차감원천징수세액(㉒-㉓)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㉔ 합계									

작성방법

㉔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㉕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㉑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

① 지급 회차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세액	⑦ 과세이연 여부
합 계						

㉒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㉑의 과세이연여부가 “해당” 인 경우 작성)

⑧ 지급 회차	⑨ 연금 계좌취급자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계좌 번호	⑫ 입금 금액	⑬ 인출 금액	⑭ 이연 퇴직소득 잔액	⑮ 원천 징수세액	⑯ 이연 퇴직소득세 잔액	⑰ 정산후 이연퇴직 소득세 차감액
합 계									

작성방법

㉕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㉔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 소득세 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 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⑦ 이연퇴직 소득세 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	⑨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⑩ 정산후 이연퇴직 소득세차감액
전 환 분											
세 액 이 연 분	증가 없 음										
	1										
	2										
	3										
	4										

작 성 방 법

㉔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 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 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임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⑩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잔과 ④ 이연퇴직소득세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서 ⑩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임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서 ⑩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차감한 금액에 각각 해당 임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⑩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란에 그 통보받은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

연금계좌 취급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주소)	
연금계좌 가입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계좌유형		⑧ 계좌번호	

이연퇴직소득 임금 및 인출 내역

작성 기준일	년 월 일				작성 담당자 (연락처)		()		
⑨ 임금 회차	⑩ 임금일	⑪ 근무처 상호	⑫ 근무처 사업자 번호	⑬ 임금 금액	⑭ 임금 금액에 대한 세액	⑮ 인출 금액	⑯ 인출 금액에 대한 세액	⑰ 이연퇴직 소득잔액	⑱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합계									

위와 같이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명세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임금·인출 내역을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 ⑦ 계좌유형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⑪ 근무처상호란: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지급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4. ⑬ 임금금액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임금금액에 대한 세액란: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6. ⑮ 인출금액란: 임금회차별 인출금액을 적습니다.
7. ⑯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란: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적습니다.
8. ⑰ 이연퇴직소득잔액란: 작성기준일 현재 이연퇴직소득 잔액을 작성합니다.
9. ⑱ 이연퇴직소득세잔액란: 인출되지 않은 ⑰ 이연퇴직소득잔액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10.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 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재공해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1. 본 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